



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 특별조치법시행규칙중개정령

◎ 통상산업부령 제66호

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중개정령을

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1997년 8월 5일

통 상 산 업 부 장 관 ㉠

❖ 제정이유

사업의 종류·규모에 따라 각종 자격자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의무고용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이 개정(1997. 4. 1, 법률 제5328호)됨에 따라, 일정범위의 광산보안관리직원은 산업안전관리자·전기안전관리담당자 등 다른 자격자의 업무를 겸직할 수 있고 일정범위의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3 내지 5 사업장이 공동으로 의무고용자를 채용할 수 있게 된 바, 이 경우의 광산보안관리직원 및 산업단지 등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.

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의 범위) 법 제24조에서 "산업단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"이라 함은 산업단지에 전기를 공급하

는 자가 산업단지의 기반시설조성시에 산업단지안의 다수의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을 말한다.

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광산보안관리직원의 범위) 법 제29조 제3항 본문에서 "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자"라 함은 광산보안법시행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산보안관리직원중 보안관리자를 말한다.

제7조(공동채용 집단화지역)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서 "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집단화지역"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역을 말한다.

1.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유도지역
2.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자유지역
3.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지역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